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(제9조 관련)

1.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 재가노인복지시설(주·야간보호, 단기보호)

세부 기준	배 점
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능력	
□ 대표자(법인)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■ 배점기준	
① 해당 없음의 경우: 10점 ②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: 8점 ③ 업무정지일이 총 31일 이상~45일 이하인 경우: 6점 ④ 업무정지일이 총 46일 이상~90일 이하인 경우: 4점 ⑤ 업무정지일이 총 91일 이상~180일 이하인 경우: 2점 ⑥ 업무정지일이 총 181일 이상인 경우(지정취소, 폐쇄명령 포함) 또는 평가·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: 0점	0~10
 ※ 지정심사일 기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※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경우에도 업무정지일수에 포함 ※ 기관의종류(장기요양기관기호기준)가 2개 이상일 경우 합산 적용 	
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	
①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없는 경우 : 3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: 2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: 1점 ④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 이상인 경우 : 0점	0~3
※ 지정심사일 기준 6년 이내 급여제공제한 일수의 합으로 산출 ※ 처분이력 종사자가 다수일 경우 합산하여 적용	
□ 대표자의 급여제공 이력	
1. 현지조사 후 결과통보 이전 휴폐업, 2.건강보험공단 평가 미실시 휴폐업, 3. 건강보험공단 평가 후 결과통보 이전 휴폐업 건수 ① 1~3 중 해당사항 없음 : 3점 ② 1~3 중 해당 건수 1회인 경우 : 2점 ③ 1~3 중 해당 건수 2회인 경우 : 1점 ④ 1~3 중 해당 건수 3회인 이상인 경우 : 0점	0~3
※ 동일기간 기관의종류(장기요양기관기호기준)가 2개 이상일 경우 합산 적용	

 □ 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능력 평가 ※노인장기요양기관 이해, 설치목적, 이념, 운영계획, 이용자 안전대책 등에 대한 대표자 평가 ※가점을 포함한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■가점기준1: 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·근무경력 ① 3년이상: 2점 ② 1년이상~3년미만: 1점 ③ 1년미만: 0점 ● 대표자의 운영·실무경력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한함. 단,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의 경우 해당분야 근무 경력 인정 ● 동일기간 경력은 중복산정 불가 ● 운영 및 실무경력은 건강보험득실확인서,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, 공공기관 시스템등 공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 ●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균값 적용(소수점 이하 반올림) 	0~10
■가점기준2: 대표자의 이전기관 건강보험공단 평과결과 ① A~B: 2점 ② C~D: 1점 ③ E: 0점	
■ 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가 다수일 경우 평균점수 반영(소수점이하 반올림)	
□ 시설장의 관리능력 평가 ※운영규정, 사업계획, 예산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숙지여부 ※장기요양기관서비스제공에 대한 전문성 ※가점을 포함한 총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	0~5
■가점기준:시설장의노인장기요양기관운영·근무경력 ① 3년이상: 2점 ② 1년이상~3년미만: 1점 ③ 1년미만: 0점 ■ 경력산정 방법은 「대표자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능력 평가 가점기준 1」과 동일	

시설의 재무건전성 □ 시설 건설원가(감정평가액)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(15점) ① 10%이하: 15점 ② 10%초과 ~ 20%이하: 13점 ③ 20%초과 ~ 30%이하: 11점 ④ 30%초과 ~ 40%이하: 9점 ⑤ 40%초과 ~ 50%이하: 7점 ⑥ 50%초과 ~ 60%이하: 5점 ① 60%초과: 3점 ※무상임차의 경우 시설설치 건물에 대한 임대인의 채권최고액 적용 ※부설·병설 기관의 입주형태가 다를 경우 평균점 적용 □ 임차보증금 대비 월간 월세비율(15점) ① 2%이하: 15점 ② 2%초과 ~ 4%이하: 12점 ③ 4%초과 ~ 6%이하 : 9점 ④ 6%초과 ~ 8%이하 : 6점 ⑤ 8%초과: 3점 $3 \sim 15$ ※무상임차의 경우 시설설치 건물에 대한 임대인의 채권최고액 적용 ※보증금에 대출이 있는 경우「전세보증금 대비 부채 비율」항목으로 산정 후 월세와 합산하여 평균값 적용(소수점 이하 반올림) ※부설·병설 기관의 입주형태가 다를 경우 평균점 적용 □ 전세보증금 대비 부채비율(15점) ① 10%이하: 15점 ② 10%초과 ~ 20%이하: 13점 ③ 20%초과 ~ 30%이하 : 11점 ④ 30%초과 ~ 40%이하: 9점 ⑤ 40%초과 ~ 50%이하: 7점 ⑥ 50%초과 ~ 60%이하: 5점 ① 60%초과 : 3점 ※무상임차의 경우 시설설치 건물에 대한 임대인의 채권최고액 적용 ※부설·병설 기관의 입주형태가 다를 경우 평균점 적용

화재 등에 대한 이용자의 안전성 및 이용편의 확보

- □ 시설의 건물 층수
- 배점기준
- ① 1층: 10점 ② 2층: 7점 ③ 3층: 4점 ④ 4층 이상: 1점
 - ※ 시설이 설치된 층수 중 최고층 기준
 - ※ 가점을 포함한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
 - ※ 감점점수는 총점에서 차감
 - ※ 휴업을 포함하여 운영중인 시설(기관)을 변경 없이 양도양수하는 경우 감점기준 포함 평가 제외(10점 부여)

 $1 \sim 10$

- 가정기준
- ① 시설의 모든 생활실·침실에 배연창 설치 : 3점
- ② 시설의 모든 내벽 및 출입문을 습식 또는 불연재(준불연재, 난연재 포함)로 설치 : 3점
- ③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[BF] 인증 : 3점
- 감점기준
- ① 시설이 연속된 층이 아닌 경우: 5점
- ② 시설의 건물이 동일지번 내에서 분리된 경우: 5점

 $0 \sim 2$

- □ 시설안전을 위한 조치사항
 - ※ 법정설치의무 사항 제외. 단. 법정설치의무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 인정

설치예정 지역에 대한 급여종류의 편중여부

- □ 설치장소가 기존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(급여종류) 중복 여부
- ① 반경 500m(동지역은 300m) 이내에 동일급여제공 시설이 없는 경우 : 3점
- ② 반경 500m(동지역은 300m) 이내에 동일급여제공 시설이 있는 경우 : 0점

 $0 \sim 3$

- ※ 건물 간 최장거리 기준, 시설의 유형 및 급여종류가 1가지 이상 중복 되는 경우 적용
- ※ 휴업을 포함하여 운영중인 시설(기관)을 변경 없이 양도양수하는 경우 평가 제외 (3점 부여)
- □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(권역별) 내 동일한 급여종류 장기요양 기관의 존재 여부
- ① 동일한 급여종류 시설의 수가 가장적은 권역에 설치할 경우: 10점
- ② 동일한 급여종류 시설의 수가 중간인 권역에 설치할 경우 : 5점
- ③ 동일한 급여종류 시설의 수가 가장많은 권역에 설치할 경우: 1점
- ※ 권역구분(법정읍·면·동 기준) : 1권역(고촌읍,풍무동,사우동,북변동,걸포동,감정동)

2권역(장기동.운양동.마산동.구래동)

3권역(양촌읍,통진읍,월곶면,하성면,대곶면)

- ※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동일급여종류로 평가
- ※ 급여종류가 2가지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평가. 단 병설·부설은 개별 평가.
- ※ 휴업을 포함하여 운영중인 시설(기관)을 변경 없이 양도양수하는 경우 평가 제외 (10점 부여)

 $1 \sim 10$

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	
□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,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	0~3
□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	0~3
□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자원 활용·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	0~3
서비스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	
□ 운영규정,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 는지 여부	0~2
□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	0~2
□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	0~2
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	
□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	0~2
	0~2
□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, 상해보험,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	
□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, 상해보험,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□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 지 여부	0~2
□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	
□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 지 여부	0~2
□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 지 여부 □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하였는지 여부	0~2

2. 재가노인복지시설(방문요양·방문목욕·방문간호)

세부 기준	배 점
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능력	
□ 대표자(법인)의 행정제재 처분이력	
■ 배점기준 ① 해당 없음의 경우: 10점 ②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: 8점 ③ 업무정지일이 총 31일 이상~45일 이하인 경우: 6점 ④ 업무정지일이 총 46일 이상~90일 이하인 경우: 4점 ⑤ 업무정지일이 총 91일 이상~180일 이하인 경우: 2점 ⑥ 업무정지일이 총 181일 이상인 경우(지정취소, 폐쇄명령 포함) 또는 평가·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: 0점	0~10
 ※ 지정심사일 기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※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경우에도 업무정지일수에 포함 ※ 기관의종류(장기요양기관기호기준)가 2개 이상일 경우 합산 적용 	
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	
①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없는 경우: 3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 미만인 경우: 2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: 1점 ④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 이상인 경우: 0점	0~3
※ 지정심사일 기준 6년 이내 급여제공제한 일수의 합으로 산출 ※ 처분이력 종사자가 다수일 경우 합산하여 적용	
□ 대표자의 급여제공 이력	
1. 현지조사 후 결과통보 이전 휴폐업, 2.건강보험공단 평가 미실시 휴폐업 3. 건강보험공단 평가 후 결과통보 이전 휴폐업 건수 ① 1~3 중 해당사항 없음 : 3점 ② 1~3 중 해당 건수 1회인 경우 : 2점 ③ 1~3 중 해당 건수 2회인 경우 : 1점 ④ 1~3 중 해당 건수 3회인 이상인 경우 : 0점	0~3
※ 동일기간 기관의종류(장기요양기관기호기준)가 2개 이상일 경우 합산 적용	

□ 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능력 평가 ※노인장기요양기관 이해, 설치목적, 이념, 운영계획, 이용자 안전대책 등에 대한 대표자 평가 ※가점을 포함한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■가점기준1 : 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·근무경력 ① 3년이상 : 2점 ② 1년이상~3년미만 : 1점 ③ 1년미만 : 0점 ■ 대표자의 운영·실무경력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한함. 단,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 구지원서비스의 경우 해당분야 근무 경력 인정	0~10
 ■ 동일기간 경력은 중복산정 불가 ■ 운영 및 실무경력은 건강보험득실확인서,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, 공공기관 시스템 등 공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 ■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균값 적용(소수점 이하 반올림) ■ 가점기준2: 대표자의 이전기관 건강보험공단 평과결과 ① A~B: 2점 ② C~D: 1점 ③ E: 0점 ■ 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가 다수일 경우 평균점수 반영(소수점이하 반올림) 	0 10
□ 시설장의 관리능력 평가 ※운영규정, 사업계획, 예산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숙지여부 ※장기요양기관서비스제공에 대한 전문성	
※가점을 포함한 총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■가점기준:시설장의노인장기요양기관운영·근무경력 ① 3년이상 : 2점 ② 1년이상~3년미만 : 1점 ③ 1년미만 : 0점 ■ 경력산정 방법은 「대표자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능력 평가 가점기준 1」과 동일	0~5
ㅇㄱᆫㅇ ㅇㅂㄴ 세표에 포르ㅇ시표ㅇ시린 ㄴㅇㅇㄱ ㅇ시 시ㅁ시ㄴ □ 최 ㅇㄹ	
	, and the second

시설의 재무건전성 □ 시설 건설원가(감정평가액)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(15점) ① 10%이하: 15점 ② 10%초과 ~ 20%이하: 13점 ③ 20%초과 ~ 30%이하: 11점 ④ 30%초과 ~ 40%이하: 9점 ⑤ 40%초과 ~ 50%이하: 7점 ⑥ 50%초과 ~ 60%이하: 5점 ⑦ 60%초과: 3점 ※무상임차의 경우 시설설치 건물에 대한 임대인의 채권최고액 적용 ※부설·병설 기관의 입주형태가 다를 경우 평균점 적용 □ 임차보증금 대비 월간 월세비율(15점) ① 2%이하: 15점 ② 2%초과 ~ 4%이하: 12점 ③ 4%초과 ~ 6%이하: 9점 ④ 6%초과 ~ 8%이하: 6점 ⑤ 8%초과 : 3점 $3 \sim 15$ ※무상임차의 경우 시설설치 건물에 대한 임대인의 채권최고액 적용 ※보증금에 대출이 있는 경우「전세보증금 대비 부채 비율」항목으로 산정 후 월세와 합산하여 평균값 적용(소수점 이하 반올림) ※부설·병설 기관의 입주형태가 다를 경우 평균점 적용 □ 전세보증금 대비 부채비율(15점) ① 10%이하: 15점 ② 10%초과 ~ 20%이하: 13점 ③ 20%초과 ~ 30%이하 : 11점 ④ 30%초과 ~ 40%이하: 9점 ⑤ 40%초과 ~ 50%이하: 7점 ⑥ 50%초과 ~ 60%이하: 5점 ⑦ 60%초과: 3점

※무상임차의 경우 시설설치 건물에 대한 임대인의 채권최고액 적용

※부설·병설 기관의 입주형태가 다를 경우 평균점 적용

설치예정 지역에 대한 급여종류의 편중여부	
□ 설치장소가 기존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(급여종류) 중복 여부	
① 반경 500m(동지역은 300m) 이내에 동일급여제공 시설이 없는 경우 : 5점 ② 반경 500m(동지역은 300m) 이내에 동일급여제공 시설이 있는 경우 : 0점	0~5
※ 건물 간 최장거리 기준, 시설의 유형 및 급여종류가 1가지 이상 중복 되는 경우 적용※ 휴업을 포함하여 운영중인 시설(기관)을 변경 없이 양도양수하는 경우 평가 제외 (5점 부여)	
□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(권역별) 내 동일한 급여종류 장기요양 기관의 존재 여부	
① 동일한 급여종류 시설의 수가 가장적은 권역에 설치할 경우: 15점 ② 동일한 급여종류 시설의 수가 중간인 권역에 설치할 경우: 10점 ③ 동일한 급여종류 시설의 수가 가장많은 권역에 설치할 경우: 5점	
 ※ 권역구분(법정동 기준): 1권역(고촌읍,풍무동,사우동,북변동,걸포동,감정동) 2권역(장기동,운양동,마산동,구래동) 3권역(양촌읍,통진읍,월곶면,하성면,대곶면) 	5~15
※ 급여종류가 2가지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평가. 단 병설·부설은 개별 평가.※ 휴업을 포함하여 운영중인 시설(기관)을 변경 없이 양도양수하는 경우 평가 제외 (15점 부여)	

г

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	
□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,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	0~3
□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	0~3
□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자원 활용·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	0~3

서비스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	
□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의 이용자 관리계획(가정방문, 보호자와 소통방법 적절성 등)	0~5
□ 운영규정,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 는지 여부	0~2
□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	0~2
□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	0~2

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	
□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	0~2
□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, 상해보험,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	0~2
□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 지 여부	0~2
□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하였는지 여부	0~2
□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	0~2
□ 직원의 건강검진, 근골격계 질환 검사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 획마련 여부	0~2
□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	0~2

3. 재가노인복지시설(복지용구지원)

세부 기준	배 점
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능력	
□ 대표자(법인)의 행정제재 처분이력	
■ 배점기준 ① 해당 없음의 경우: 10점 ②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: 8점 ③ 업무정지일이 총 31일 이상~45일 이하인 경우: 6점 ④ 업무정지일이 총 46일 이상~90일 이하인 경우: 4점 ⑤ 업무정지일이 총 91일 이상~180일 이하인 경우: 2점 ⑥ 업무정지일이 총 181일 이상인 경우(지정취소, 폐쇄명령 포함) 또는 평가·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: 0점	0~10
※ 지정심사일 기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※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경우에도 업무정지일수에 포함 ※ 기관의종류(장기요양기관기호기준)가 2개 이상일 경우 합산 적용	
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	
①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없는 경우: 3점 ②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 미만인 경우: 2점 ③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: 1점 ④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 이상인 경우: 0점	0~3
※ 지정심사일 기준 6년 이내 급여제공제한 일수의 합으로 산출 ※ 처분이력 종사자가 다수일 경우 합산하여 적용	
□ 대표자의 급여제공 이력	
1. 현지조사 후 결과통보 이전 휴폐업, 2.건강보험공단 평가 미실시 휴폐업 3. 건강보험공단 평가 후 결과통보 이전 휴폐업 건수 ① 1~3 중 해당사항 없음 : 3점 ② 1~3 중 해당 건수 1회인 경우 : 2점 ③ 1~3 중 해당 건수 2회인 경우 : 1점 ④ 1~3 중 해당 건수 3회인 이상인 경우 : 0점	0~3
※ 동일기간 기관의종류(장기요양기관기호기준)가 2개 이상일 경우 합산 적용	

□ 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능력 평가 ※노인장기요양기관 이해, 설치목적, 이념, 운영계획, 이용자 안전대책 등에 대한 대표자 평가 ※가점을 포함한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■가점기준1 : 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·근무경력 ① 3년이상 : 2점 ② 1년이상~3년미만 : 1점 ③ 1년미만 : 0점 ■ 대표자의 운영·실무경력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한함. 단,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의 경우 해당분야 근무 경력 인정 ■ 동일기간 경력은 중복산정 불가 ■ 운영 및 실무경력은 건강보험득실확인서,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, 공공기관 시스템등 공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 ■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균값 적용(소수점 이하 반올림) ■ 가점기준2 : 대표자의 이전기관 건강보험공단 평과결과	0~10
① A~B: 2점 ② C~D: 1점 ③ E: 0점	
■ 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가 다수일 경우 평균점수 반영(소수점이하 반올림)	
□ 시설장의 관리능력 평가 ※운영규정, 사업계획, 예산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숙지여부 ※장기요양기관서비스제공에 대한 전문성 ※가점을 포함한 총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	0~5
■ 가점기준:시설장의노인장기요양기관운영·근무경력 ① 3년이상: 2점 ② 1년이상~3년미만: 1점 ③ 1년미만: 0점 ■ 경력산정 방법은 「대표자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능력 평가 가점기준 1」과 동일	

시설의 재무건전성 □ 시설 건설원가(감정평가액)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(15점) ② 10%초과 ~ 20%이하 : 13점 ① 10%이하: 15점 ③ 20%초과 ~ 30%이하: 11점 ④ 30%초과 ~ 40%이하: 9점 ⑤ 40%초과 ~ 50%이하 : 7점 ⑥ 50%초과 ~ 60%이하: 5점 ⑦ 60%초과 : 3점 ※무상임차의 경우 시설설치 건물에 대한 임대인의 채권최고액 적용 ※부설·병설 기관의 입주형태가 다를 경우 평균점 적용 □ 임차보증금 대비 월간 월세비율(15점) ① 2%이하: 15점 ② 2%초과 ~ 4%이하: 12점 ③ 4%초과 ~ 6%이하 : 9점 ④ 6%초과 ~ 8%이하 : 6점 ⑤ 8%초과 : 3점 $3 \sim 15$ ※무상임차의 경우 시설설치 건물에 대한 임대인의 채권최고액 적용 ※보증금에 대출이 있는 경우「전세보증금 대비 부채 비율」항목으로 산정 후 월세와 합산하여 평균값 적용(소수점 이하 반올림) ※부설·병설 기관의 입주형태가 다를 경우 평균점 적용 □ 전세보증금 대비 부채비율(15점) ① 10%이하: 15점 ② 10%초과 ~ 20%이하: 13점 ③ 20%초과 ~ 30%이하 : 11점 ④ 30%초과 ~ 40%이하: 9점 ⑤ 40%초과 ~ 50%이하: 7점 ⑥ 50%초과 ~ 60%이하: 5점 ① 60%초과 : 3점 ※무상임차의 경우 시설설치 건물에 대한 임대인의 채권최고액 적용 ※부설·병설 기관의 입주형태가 다를 경우 평균점 적용

설치예정 지역에 대한 급여종류의 편중여부	
□ 설치장소가 기존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(급여종류) 중복 여부 ① 반경 500m(동지역은 300m) 이내에 동일급여제공 시설이 없는 경우 : 5점 ② 반경 500m(동지역은 300m) 이내에 동일급여제공 시설이 있는 경우 : 0점 ※ 건물 간 최장거리 기준, 시설의 유형 및 급여종류가 1가지 이상 중복 되는 경우 적용 ※ 휴업을 포함하여 운영중인 시설(기관)을 변경 없이 양도양수하는 경우 평가 제외 (5점 부여)	0~5
□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(권역별) 내 동일한 급여종류 장기요양기관의 존재 여부 ① 동일한 급여종류 시설의 수가 가장적은 권역에 설치할 경우 : 15점 ② 동일한 급여종류 시설의 수가 중간인 권역에 설치할 경우 : 10점 ③ 동일한 급여종류 시설의 수가 가장많은 권역에 설치할 경우 : 5점 ※ 권역구분(법정동 기준) : 1권역(고촌읍,풍무동,사우동,북변동,걸포동,감정동)	5~15
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	
□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,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	0~3
□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	0~3
서비스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	
□ 운영규정,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 는지 여부	0~2
□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	0~2
□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	0~2
□ 대여용구의 관리 및 소독 계획	0~4
□ 복지용구 취급품목의 적절성	0~4

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	
□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	0~2
□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, 상해보험,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	0~2
□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 지 여부	0~2
□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하였는지 여부	0~2
□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	0~2
□ 직원의 건강검진, 근골격계 질환 검사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 획마련 여부	0~2
□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	0~2